[제2급]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(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, EHEC)

2023.07.31. 기준

구 분	내 용			
감염병 분류	○ 제2급 법정감염병			
	○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			
원인병원체	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(EHEC) / Shiga Toxin-producing Escherichia			
	Coll(STEC)			
	- https://phil.cdc.gov/Details.aspx?pid=18160, 9995 -			
	- 장내세균과에 속하는 그람 음성 혐기성 막대균으로 운동성이 있으며, 젖당, 과당을			
	분해하여 산과 가스를 생성하는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 세균			
	- 장내출혈성대장균은 시가독소(Shiga toxin 또는 verotoxin)를 생산하며, 주요 독소유전자는 stx1(vt1), stx2(vt2)에 의해 증상 유발			
	- 시가독소는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, 세포를 사멸시키며 장 및 신장 상피세포			
	들의 주요 표적이 됨			
	- 병원성 대장균처럼 장 점막에 흡착하여 융모를 소실시켜 설사를 유발함 - 신장 사구체 상피세포의 손상과 모세혈관 폐색에 의한 급성신부전증을 유발함			
	* 혈청형은 70여종이 있으나, O26, O45, O103, O111, O121, O145, O157과 시가독소를			
	생산하는 다른 혈청 그룹의 대장균들은 전략물자 통제 병원체(시가독소, Shiga toxin)를 생성함			
	│ ○ 소독 및 불활성화: 70% ethyl alcohol, hypochlorite, glutaraldehyde, quaternary			
	ammonium, phenolics, 121°C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, 160-170°C에서 1시간			
1401 : /=1040;	이상 건열멸균 등			
병원소(감염원)	○ 소가 가장 중요한 병원소임 ○ 소, 양, 염소, 돼지, 개, 닭 등 가축에서도 발견됨			
 발생현황				
5 0 L 2	[국외현황] ○ 1982년 발견된 후 북아메리카, 유럽, 일본에서 유행 발생			
	- (일본) 1990년 집단 환자 발생 최초 보고			
	• 1996년 유행 당시 12,000명의 환자 발생하여 12명 사망하였으며 이후로 연간			
	1,000명 이하로 감소함 - (영국) 1980년부터 EHEC 분리, 1990년대 정점, 2005년부터 약 1,000건 정도 분리			
	- (스코틀랜드) 1996년 유행으로 496명 환자 발생하여 16명 사망			
	- (독일)			
	· 2011.5.17.4. EHEC 0104:H4 환자 총 3,824명 발생함			
	·용혈성요독증후군 855명, 사망 53명, 전 세계에서 보고된 최대 규모의 유행임			

구 분	내 용				
	- (미국) 2011-2013년 연간 약 5,000 사례 정도 신고 [국내현황] ○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이후 최근 10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○ 2000-2013년 연간 50명 내외의 환자가 신고됨 ○ 2014년 이후 연간 100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다가 2019년부터 증가, 2020년에는 270명, 2021년 165명, 2022년 212명으로 10년간 발생률은 10만 명당 약 0.12-0.4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- 지역적으로는 서울, 경기, 광주지역에서 꾸준히 증가하며 다발생률을 보임				
호발시기	○ 연중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6-8월에 다발생				
진단검사 및 신고기준	○ 연중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6-8혈에 다발생 [신고를 위한 진단기준] ○ 환자: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 부합하는 임상증상*을 나타내면서 다음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○ 의사환자 - 의심환자: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의심되나 다음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합당한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- 추정환자: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의심되며,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○ 병원체보유자: 임상증상은 없으나 다음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* 임상증상 - 발열, 구토, 복통, 수양성 설사 및 혈변 등 - 용혈성 빈혈, 혈소판 감소증 또는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, 급성 신부전 등을 특징으로하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함 [진단을 위한 검사기준]				
	구분	검사기준	검사법	세부검사법	
	확인진단	검체(대변, 직장도말물)에서 Shiga 독소 유전자 (stx1, stx2)를 보유한 <i>E. coli</i> 분리 동정	배양검사	분리 동정, 혈청형 확인, PCR	
	추정진단	검체(대변, 직장도말물)에서 Shiga 독소 유전자 (stx1, stx2) 검출	유전자검출검사	PCR	
신고 및 보고	○ 신고범위: 환자, 의사환자, 병원체보유자 ○ 신고시기: 24시간 이내 ○ 신고방법: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(http//is.kdca.go.kr) 내 '감염병웹신고' 또는 팩스				
사례조사 및 유행역학조사	[대상] ○ 개별사례: 환자, 의사환자, 병원체보유자 ○ 유행사례: 시간, 장소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2명 이상의 집단에서 설사, 구토 등의 장관감염증 증상*이 있는 경우 * 설사, 복통, 오심, 구토, 발열 등이 주증상이며 설사는 평소에 비해 더 많이 수양성 변이나 무른 변을 보는 경우 또는 1일 3회 이상인 경우 [시기] ○ 신고 후 지체없이				



구 분	내용
	 □ 발열(미열), 오심, 구토 □ 용혈성 빈혈, 혈소판 감소증 또는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, 급성신부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함 □ 증상은 5-7일간 지속 후 저절로 호전되나, 질병의 중증도는 경증에서 생명을 위협 하는 수준까지 다양함 □ 합병증 □ (용혈성요독증후군) □ 10% 환자에서 합병증으로 용혈성요독증후군 발생 가능 □ 10세 미만 소아나 노인에서 흔하고, 대개 설사 시작 후 3-5일 후 발생하나, 최대 2주 후에 발생하기도 함 □ 용혈로 검붉은 소변,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핍뇨, 무뇨가 나타남 □ 자반, 점막 출혈, 간비대 등의 소견도 관찰됨 □ 30-50%에서 무기력, 경련, 혼수 등 신경학적 증상 동반됨 □ 대부분 적절한 치료로 후유증 없이 회복됨 □ (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)
치명률	○ 용혈성요독증후군 진행 시 3-5%
치료	 ○ 대증치료 -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공급 및 전해질 신속히 공급 - 지사제, 항생제 사용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유발 위험으로 권장되지 않음 - 급성신부전 시 혈액 투석이 필요할 수 있음 ○ 항생제치료 -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용혈성요독증후군 유발 위험으로 항생제 사용은 권장되지 않음
환자관리	 ○ (감염주의) 표준주의 준수 ○ (격리방법) - 입원격리치료가 원칙 - 환자, 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품 소독 철저 - 적극적 수분 보충을 위해 경구 및 정맥주사로 공급 ○ (격리시점) 환자 인지 후 즉시 격리 ○ (격리해제) -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: 퇴원 시 격리해제* *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증상 소실 후 48시간 경과 시 격리해제 - 자가치료를 하는 경우 • 증상소실 후 48시간 경과 시 격리해제(단, 무증상자는 확진검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 확진검사 확인 후 격리해제) ○ (추적관리) - 고위험군*은 격리해제 후 배양검사 또는 PCR 검사에서(항생제 치료 시, 항생제 치료 완료 48시간 경과 후) 24시간 간격 2회 연속 음성 확인 시까지 업무・등원제한 및 능동감시** (1회 이상 양성 확인 시 최대 1주일 간격으로 검사권고) → 최종 2회 연속 음성 확인 후 관리종료 * 식품업객종사자, 보육시설종사자, 요양시설종사자, 어린이집 · 유치원 원생 등

** 최대 1주 간격으로 시행

Z F
~
=
숙
ᄚ
2
11
⊘ '
잂
내
- 11
ᅩ
O
-
11
<u></u>
님
œ
\bar{z}
$\overline{}$
0
01
안
2
OF.
\sim

구 분	내용	
	○ (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) - 조리종사자 및 음식 취급하는 자 - 보건의료인 - 보육시설 종사자 - 학교 등교, 유치원·어린이집 등원 - 요양시설 종사자	
접촉자관리	 ○ (발병여부 관찰) 환자와 음식, 식수를 같이 섭취한 접촉자는 마지막 폭로가능 시점 부터 10일간 발병여부 감시 - 유증상자: 유증상 접촉자는 환자로 간주하고 배양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 조치 - 무증상자: 증상발생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도록 안내 · 접촉자 중 전파위험이 높은 직업군*은 증상이 없어도 배양검사에서 음성임을 확인 후 업무 가능 * 전파위험이 높은 직업군: 보육시설 및 요양시설 종사자, 조리종사자를 포함한 요식업종사자, 간호, 간병, 의료종사자 등 	
특수한 상황관리	[환자가 보육시설 아동, 종사자인 경우] ○ 환자와 같은 반 아동의 부모에게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발생 고지 ○ 환자 발생 1개월 전부터 보육시설 출석상황 조사하여 의심환자 분류 ○ 유증상자, 환자 발생 2주 전부터 의심증상자는 배양검사(대변검체) 실시 ○ 보육시설 종사자의 음식취급 시 배변 및 기저귀 교체 후 손 씻기 강화 ○ 시설장은 아동 및 종사자의 증상여부 관찰 - 증상이 있을 경우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 [환자가 간병, 간호, 의료종사자인 경우] ○ 지난 1개월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 유무를 파악, 의심환자가 있을 경우 추가 공동 노출원 여부 조사	
예방접종	○ 수동 및 능동면역 - 현재 연구 중인 수동 및 능동면역 없음	
예방관리	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 씻기 외출 후, 화장실을 다녀온 뒤, 조리 전, 기저귀를 사용하는 영유아를 돌본 뒤, 더러운 옷이나 린넨 취급 후 등 안전한 음식섭취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하여 익혀먹기 * 비살균 우유, 날 육류 등은 피하고, 소고기는 중심온도 72℃ 이상으로 익혀서 먹기 물은 끓여 먹기 채소, 과일은 깨끗이 씻어서 껍질 벗겨 먹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칼・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기 조리도구(채소용, 고기용, 생선용)는 구분하여 사용하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수영할 때 강물, 호숫물, 수영장 물 마시지 않기 	

구 분	내 용	
	올바른 손 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조리도구 분리사용	
관련지침	 ○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 ○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○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안내 ○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○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	
참고자료	○ 질병관리청. 2023년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 ○ 질병관리청. 2023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제4판 ○ 질병관리청. 2023 법정감염병 진단·신고기준 ○ 질병관리청/대한감염학회.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○ https://www.cdc.gov/ecoli	